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⑫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Ⅱ.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1. 벌칙의 종류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칙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6.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7. 각종 노무관련 법령상 벌칙
1) 산업재해보상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3)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관련 사용자에 대한 벌칙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지난 호
2. 사례(CASE)별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범위 ····· **이번 호**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 다음 호

2. 사례(CASE)별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

▣ 적용시기

'05년에 최초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로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이며 '06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는 '0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된 30억원 미만 건설공사입니다.

따라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 금액인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시행 이전인 2005년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변경계약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도급계약시 3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3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계약시 3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 중 어느 경우에 의무적으로 30% 직접시공해야 합니까?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 여부의 판단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30억 이상이 되었더라도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3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제는 2006. 1.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 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3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할 부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공동도급(구성원 3인, 지분율 50 : 30 : 20)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직접시공의무는 1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30% 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면 되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동 직접시공비율(30%)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의 비율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3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재하도급, 시공참여자 포함)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일괄하도급을 서면승낙하여 직접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부분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서면승낙시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발주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시공 의무 면제를 위해 별도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라야 상기 규정에 의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재구입과 장비임대비용은 건설업자가 지급해주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직접시공부분에 포함됩니까?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자재구입 또는 장비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계획 · 관리 · 조정 업무를 직접시공 범위에 포함됩니까?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계획 · 관리 · 조정 업무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계약된 부분도 직접시공에 해당합니까?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시공참여자와 시공약정한 경우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시공(인력 직접조달)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의 무대상공사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양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단시일이고 공종이 단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시기 및 공사내용의 단순성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약식 형태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경미한공사)							
공사명							
① 공 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성명)		주 소	
수급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공 사 개 요							
②계약일	년 월 일	③ 착공일	년 월 일	④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 접 시 공 계 획							
⑥직접시공금액				⑦하도급(예정) 금액			
원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영어 유머

An excellent work and A best seller – 명작과 베스트셀러

A group of writers were discussing the ideal opening for a commercially successful piece of fiction. They agreed that the first paragraph should contain ① sex, ② high life and big money, and ③ an unconventional situation.
On that basis, one of them contrived this unbeatable beginning:
'Damn it,' said Duchess to the King, 'take your hand off my leg.'

일단의 작가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설은 그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토론했다. 첫 대목에 ① 섹스, ② 상류사회의 사치생활과 떼돈, ③ 이례적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탁월한 서두를 엮어냈다.
'빌어먹을! 그 손 내 다리에서 치워요.' 라고 공작부인은 임금에게 말했다.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中에서